

#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도서관 면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Interlibrary Loan

홍 재 현(Jae-Hyun Hong)\*\*

## 초 록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현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인 면책 적용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우리 현행저작권법에 입각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방안과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법적 개정 방안은 2005년 또는 향후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is an advanced service to satisfy information need of end-user by the cooperativ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t present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 on library exemption of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interlibrary loa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 legal pla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library exemption dealing with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Fax and Ariel system. The study examined the international trends on library exemption related to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in foreign copyright laws, analyzed the library exemption related to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in the present Korean copyright law, and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present library exemption. A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the study suggested a revised plan of the present Korean copyright law in order to provide regulation of library exemption dealing with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interlibrary loan. Thus the revised plan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providing the regulation for the future of library exemption in Korea.

키워드: 도서관 면책, 도서관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저작권법, Ariel 시스템  
library exemption, interlibrary loan, document delivery service, copyright law, Ariel system

- 
- \* 이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 내용 중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hong@joongbu.ac.kr)
  - 논문접수일자 : 2005년 1월 30일
  - 게재확정일자 : 2005년 3월 8일

## 1. 서론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의 공동이용에 의해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로서 정보화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상호대차에 따른 원문복사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상호대차(ILL: InterLibrary Loan)는 협정을 맺은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소장한 자료를 빌려 주거나 그 자료의 복사물을 제공하는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교류 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 도서관 상호대차는 자기 도서관이 소장하지 못한 자료를 이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 요청하고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수신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으로 바뀌면서 우편은 물론 Fax, Ariel 시스템<sup>1)</sup>이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문헌(원문)배달 서비스(DDS: Document Delivery Service)로 발달하고 있다.

그런데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 복사서비스의 제공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도서관들은 이용 저작물의 저작권자(출판권자 포함)의 권리를 해치지 않고서 원문복

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

현재 도서관은 무제한의 복제·전송을 허용하였다는 호된 비난과 질책을 받은 2000년 개정저작권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면책 조건이 엄격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진 2003년 개정저작권법 제28조의 도서관 면책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2004년 7월 1일부터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도서관간 복제·전송 및 디지털 형태 원문의 출력' 행위에 대해 '보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04년 11월 현재 265개 도서관이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저작권 논의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즉 국내의 저작물의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무상의 자유이용이 가능한 면책 사항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행위가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지의 여부가 도서관 관계에서 새로운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 내에 이에 대한 면책을 아우르는 규정이나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하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도서관

1) Ariel이란 미국의 RLG(Research Libraries Group)가 1991년에 개발한 인터넷상의 원문전송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Ariel 시스템은 쌍방이 모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을 때, 한 쪽에서 송신할 원문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 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상대 PC로 송신하면 상대 PC에서 프린터로 출력시키는 방식의 이용형태를 나타낸다. Ariel의 특징은 원문을 사진복사하지 않고 스캔 하면 되고, FTP/E-mail로 직접 이용자에게 전자적 이미지로 된 원문의 송신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하고, 속도·질·신뢰성에서 Fax의 기능을 능가하여 원문전송에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버전 4.0까지 나와 있다(<http://www.infotrieve.com/ariel/index.html>). 우리나라에서 Ariel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신원데이터넷 담당자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Ariel을 이용하는 대학도서관은 약 40개 기관에 이른다고 한다.

면책 여부에 대하여 해석만 분분할 뿐,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 상황에서 도서관은 Fax 및 Ariel를 통한 원문 복사물 제공과 관련하여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는 일단 중지하는 등 각별히 주의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용물의 권리처리 문제를 우려하여 Fax 및 Ariel 시스템을 통한 원문복사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중지한다는 것은 너무 미온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지식 정보의 창출 및 경쟁력 제고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도서관이 그에 대한 이유를 일일이 정보이용자들에게 납득시키고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는 것도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다. 도서관에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전된 기술이나 방법을 널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법 정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그 사용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에서의 안전한 원문복사서비스의 제공과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 제공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상호대처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인 면책 적용의 동향을 국제규범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이어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의 법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내려진 상이한 해석들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방안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 개정방안의 내용과 조문을 구

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내용은 상호대처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와 저작권 관계에 관한 지식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한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법시행령에 관한 개정 방안은 2005년 또는 향후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문헌 조사 및 문헌 분석을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저작권 분야 전문가 또는 상호대처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화 상담도 병행하였다. 셋째, 상호대처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통계 데이터는 주로 KERIS가 조사 분석한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넷째, 지적재산권 분야 법대 교수님들과 유관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2004. 11. 23.)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내용을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끝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동연구원과 주고받은 의견을 수렴하여 저작권법과 저작권법시행령 개정안의 조문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한편 적법한 권리 처리가 이루어진 계약을 통해 구매(독)되는 경우 또는 이용허락동의서(허락서)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나 이용허락동의서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조건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상호대처에 의한 원문복사는 본 연구의 논의 대상임을 밝힌다.

## 2.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도서관 면책에 관한 국제 동향

### 2.1 국제 규범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가 국제적으로 도서관 면책 대상인지, 또한 이를 규율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른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 이하 WCT라 한다) 등의 국제적인 규범에서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이 별도의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다만, 포괄적인 성격의 일반 조항인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두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 제한 규정은 베른협약에서는 제9조(2),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이라 한다)에서는 제13조의 제한과 예외, 그리고 WCT에서는 제10조 제한과 예외 규정이 이에 해당된다. 베른협약은 그 제한을 복제권에 한정하고 있으나, TRIPs 협정과 WCT는 배타적 권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겠다.

베른협약 제9조의 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

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TRIPs 협정 제13조의 제한과 예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권리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끝으로 WCT 제10조 제한과 예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계약 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 (2) 계약 당사자는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제 규범들은 도서관 상호대차에 관한 면책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에 관한 면책은 포괄적인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또한 도서관 상호대

차에 의한 원문제공 행위에 대한 면책 결정은 베른협약, TRIPs 협정, WCT 등 국제 규범에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 제한의 '3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를 통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 복사 행위는 첫째,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며 셋째,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면책을 요구한다면, 이를 규율하는 명시적인 법적 면책 규정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국내법이 되겠지만, 국내법은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인지하고 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 자세 및 전략 마련이 더욱 요구된다.

## 2. 2 미국

미국은 저작권법에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제공에 관한 면책 규정을 제108조 (g) (2)항에 명문화하여 규율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이 상호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원문 복사에 관한 면책을 규율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의 권리 관계를 저작권법

의 큰 틀 및 계약의 조건과 방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처리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8조 (g)(2)항의 그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배포권은, 단일의 동일한 자료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연관됨이 없이 따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략, 또는

(2)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 직원이 (d)항에 규정된 자료의 하나 또는 다수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조직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데 관여한 경우. 다만, 목적으로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용으로 수령하는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구독신청을 하거나 구입하여야 할 저작물을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모으는 것으로 대체하려 하지 아니하는 '도서관 상호협정'(inter-library arrangements)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한 면책 조건으로 다른 도서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도서관이 소장한 아날로그 자료를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여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법에 명기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조직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지 아니하는 경우  
둘째, 구독이나 구입을 대체할 목적이 아니

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져 올 만큼의  
총량을 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이나 출판사 등 관련 주요 당사자들의 관심 대상인 그 총량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의도 내리고 있지 않다.

한편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도서관 상호대차협정에 따른 사진복사에 관한 CONTU(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 지침(1976년 작성)』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108조 (g)(2)에서 허용하는 도서관 상호대차협정을 통한 사진복제(photocopying) 총량의 정의에 대한 도서관과 저작권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제108조 (g)(2)의 단서에 대한 것으로서, 도서관간 거래에서 최신 정기간행물 논문기사의 사진복사가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년에 5부까지만 복사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 지침은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에 대한 신청기관의 복제요청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구독이나 구입을 대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 올 만큼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논문 복사의 '총량'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끝내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최경수 역 1994, 120-123).

현재 본 지침은 인쇄 자료의 경우에는 여전히

히 유효한 지침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도서관 상호대차 지침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CONTU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물과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서의 지침 준비를 위하여 『공정사용에 관한 협의회(Conference on Fair Use : 이하 CONFU라 한다)』의 구성을 들 수 있다. CONFU는 1994년 9월 지적재산권작업반(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주관 하에 약 60여개의 관련단체의 참여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이다. 이 CONFU 연구 집단에 의해 도서관에서의 상호대차 및 온라인 문헌제공서비스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1996년 3월 27일 CONFU는 연구 결과물로 『디지털 문헌의 디지털 전송에 관한 지침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은 인쇄물의 디지털 스캐닝에 관한 문제에 낮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아직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지배적으로 나타냈다. 1996년 봄과 여름에 걸쳐 후속 논의가 있었지만, 저작권자와 이용자 집단이 만족하는 도서관에 의한 인쇄 자료의 디지털 제공의 지침안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도서관 상호대차 협정 하에서의 인쇄물의 디지털 제공에 관한 지침안의 마련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홍재현 1998, 262, 266, 271-272).

### 2.3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저작권법은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에 속하지만, 미국 저작권법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큰 폭의 개정을 겪었다. 그것은 1968년 오스트레일리아 저작권법을 근간으로 하는 저작권법인 『개정저작권법 2000(디지털 의제)』(Copyright Amendment (Digital Agenda) Act 2000)로 개정된 것

을 말한다. 이 개정법에서 제49조에서 53조에 이르는 도서관 면책 규정이 크게 수정되었고, 전자적 형태로 된 저작물에 대한 도서관의 면책이 확대되었다. 이에 오스트레일리아 도서관 면책 규정에서 원문복사서비스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저작권법에서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 조항은 제49조, 제50조라 할 수 있다. 그 관련 조항의 내용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49조(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의한 이용자를 위한 복제 및 전달(communication)<sup>2)</sup>)

- (1) 누구든지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의 권한 있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출할 수 있다.
  - (a)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 또는 그 일부의 복제물이나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 이외의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을 제공해 달라는 서면 요청 : 및
  - (b) 아래의 뜻을 기재한 서명된 신청서
    - (i)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복제물이 필요하며, 그 밖의 목적으로는 이용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 (중략)
- (2A) 누구든지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의 권한 있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a)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 또는 그 일부의 복제물이나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 이외의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
  - (b) 아래의 뜻을 포함한 신청
    - (i)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복제물이 필요하며, 그 밖의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중략)

제50조(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의한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달)

- (1) 다음 각 호의 경우,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은 다른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에게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 또는 그 밖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a) 그 복제물을 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중략)
  - (b) 제49조에 따라 복제물을 '요청한 자'에게 복제물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 (2) (1)에 따라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이 다른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에게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는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은 요청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게 하여 이를 요청한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3) (2)에 따라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이 (1)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게 하여 다른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중략)
- (4)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 또는 그 밖의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을 (3)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을 대리하여 제작된 경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논문 또는 그 밖의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a) 복제물로 만들어져서; 또한
  - (b) 그 저작물이 (2)의 규정에 따라 '전달'의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
- (7C) (a)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을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이 '전자적' 형식으로 제작하여
  - (b) 그 복제물을 (2)의 규정에 따라 다른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그 복제물을 제공한 직후 '파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복제와 관련하여 (4)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서관 면책 규정에서는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를 규율하기 위한 독립된 조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협정 내지 상호대차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 대신에 상기한 바의 제49조와 제50조 (1)(b)/(2)(1)/(3)(2)/(4)/(7C)(a)(b)의 조항에 걸쳐서 말을 풀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오스트레일리아 저작권법에서는 조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로부터의 복제물 요청을 받아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이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을 '전자적' 형식으로 제작하여 다른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에게 '전달'의 방법으로 제공할 때에는,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그 복제물을 제공한 직후 '파기'하는 경우에 한하

여 면책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아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도서관 면책을 명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 2. 4 일본

현행 일본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을 수용하기 이전의 1986년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를 규율하는 면책 조항 또한 동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

2) 여기에서의 '전달'이라는 개념은 자료를 전자우편에 의해 전자적으로 송신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송신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저작권법은 그 개정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도서관 면책 규정에 대한 개정도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에서는 별도의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1년간의 검토 끝에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심의경과의 개요」를 2001년 12월에 발표하였다([http://www.cric.or.jp/houkoku/h13\\_12b/h13\\_12b.html](http://www.cric.or.jp/houkoku/h13_12b/h13_12b.html)). 도서관 규정의 개정 사항은 여기에서 그 하나의 소위원회로 설치된 정보소위원회에서 권리제한의 확대 관점과 권리제한의 축소 관점으로 대분되어 검토되었다. 그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리제한의 확대 관점에서는 도서관 등이 예외적으로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팩시밀리 등의 공중송신에 의하여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지는 것과, 공익을 위하여 입수 곤란한 도서관 자료에 게재된 저작물의 전부를 예외적으로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는 것이다. 반면에 권리제한의 축소 관점에서는 상업목적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이용자가 도서관 등에 복제를 구한 경우에 대하여 권리제한의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 하지는 것이다.

그 후 이 개요를 좀더 수정하고 심화시킨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심의경과보고」가 2003년 1월에 발표되었다([http://www.cric.or.jp/houkoku/h15\\_1b/h15\\_1b.html](http://www.cric.or.jp/houkoku/h15_1b/h15_1b.html)). 여기에서는 심의개요에서 검토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법 개정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 이용자에게로의 팩스 송신을 도서관 관련단체와 저작권단체 등의 관계자 간에서 협의의 중인 주요 과제로 언급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다. 앞으로 그 개정 내용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도서관측의 의견을 더욱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3. 우리나라에서의 도서관 상호대처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와 저작권 관계

현재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도서관 상호대처서비스에 의한 원문복사 제공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도서관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핫이슈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도서관 상호대처에 의한 원문복사 제공 방법 중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 송신의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한다. 이어서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도서관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여부에 관한 견해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는 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 3.1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 송신의 법적 성질

##### 1) 방송/전송의 정의 및 특징

방송과 전송에 대한 정의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 2) Fax 및 Ariel 송신의 특징

Fax 및 Ariel 송신의 특징을 전송의 특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1〉 방송/전송의 정의 및 특징

|     | 방 송   | 전 송   |
|-----|---|---|
| 정 의 |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br>(저작권법 제2조 제8호) |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br>(저작권법 제2조 9의 2) |
| 특 징 | • 1 : 다수의 일방향성<br>• 동시수신(일반 공중이 모두 같은 시각에 동일한 콘텐츠에 동시 접근하는 것을 의미)                       | • 1:1 쌍방향성<br>• 이시수신  |

〈표 2〉 전송, Fax 및 Ariel 송신과의 특징 비교

| 전 송                   | Fax 송신   | Ariel 송신   |
|-----------------------|--|--|
| • 1:1 쌍방향성<br>• 이시 수신 | • 1:1 송신<br>• 기술적으로 1:다수의 송신 가능<br>• 개인별로 시차가 있는 이시 수신 | • 1:1 송신<br>• 기술적으로 1:다수의 송신 가능<br>• 개인별로 시차가 있는 이시 수신 |

3) 문화관광부의 Fax 및 Ariel 송신에 대한 해석<sup>3)</sup>

문화관광부는 Fax 및 Ariel 송신은 “특정 개인만이 접근할 수 있고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송에는 해당되지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4) 전송에서의 ‘일반 공중’의 의미에 대한 제 해석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전송의 개념은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만, ‘일반 공중’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그로 인하여 전송의 개념에서 ‘일반 공중’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련법에서의 정의 및 해석

①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송권의 개념에 포함된 ‘공중’의 개념에 대하여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5호).

② 일본 저작권법

“이 법률에서 말하는 ‘공중’에는 특정 다수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5항)고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유관 기관 및 학자의 제 해석

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2, 45-49)

- 공중은 저작권법 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범위의 한계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공중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는 다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공중의 개념이 현행 저작권법

3) 본 해석은 KERIS가 문화관광부에 상호대차 서비스의 도서관 보상금제도 포함 여부 확인을 요청(학술04 1C212-00066)한 것에 대한 회신 내용임(저작권과-1800). 이 회신 내용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저 사항임. 2004.10.01

에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일반법이나 일반적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공중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저작권법 관련 판례는 공중을 불특정다수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공중의 개념 범주가 불특정 다수인에만 한정된다면,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공중의 개념 범주는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는데 인터넷은 불특정 또는 특정의 다수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별적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공중의 개념에 특정다수인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별적 접근은 문제가 될 것이다. 특정 다수인에 개별적 접근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의 개념에 특정의 다수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이해하던 기존 보다는 일정 부분 저작권자 등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 WCT의 공중전달권은 “일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라고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전송의 정의는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라고만 하고 있어 ‘구성원’이라는 요소는 빠져 있다. 공중의 개념은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특히 ‘전송’

과 관련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때 공중에 특정 다수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전송의 정의에서 ‘구성원’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검토 결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공중’을 ‘특정다수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기하여 정의하고, 일반 공중, 공중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공중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 ② 장인숙

현행 저작권법상 공중에 대해서 무엇이 공중인가 하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의하여 사례별로 판단될 문제이다.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이라도(예: 대규모 정당집회, 회원대회) 정도에 따라서는 공중이 될 수 있고 동일 장소나 동일 시간이 아니라 분산된 개별 접촉도 집적되면 공중접촉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장인숙 1996, 78).

## ③ 오승중·이해완

저작권법상 일반 공중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공중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일반 공중의 개념에는 불특정 다수인만이 아니라 특정 다수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오승중, 이해완 2004, 288).

어쨌든 Fax 및 Ariel 송신이 특정 수신자를

전제로 송신하므로 “특정 개인만이 접근할 수 있고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송에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밝힌 문화관광부의 유권 해석을 일단은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송에서 사용되는 ‘일반 공중’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정의 또는 전송의 개념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없는 현 상황에서, 문화관광부의 해석과 달리하는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전송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 공중, 공중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는 일반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석상의 혼란을 없앨 수 있도록 공중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중’을 ‘특정 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도록 법조문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3.2 Fax를 이용한 원문 복사 서비스의 면책 여부

#### 1) 문화관광부 해석

Fax를 통한 서비스는 송신되는 문헌이 디지털 복제물이 아닌 아날로그 복제물이고, 또한 도서관간 복제물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동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을 요청하는 도서관이 해당문헌이 절판되어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 2) 문화관광부 해석에 대한 견해

문화관광부의 해석은 Fax를 통한 원문복사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법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보존용으로 제공한 경우, 그 보존용으로 제공받은 문헌을 그 신청도서관 내에서만 이용자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면책을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자관에 없는 자료를 보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이를 소장한 다른 도서관 등이 원문을 복사 제공하면 이를 신청도서관이 관외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 보편적인 이용 행태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해석은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 서비스의 취지 및 목적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현행법상 도서관 등이 다른 도서관 등의 요청에 따라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여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상의 면책 대상이다. 더욱이 Fax를 통한 원문복사의 면책 조항으로 동법 동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도서관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거의 없거나 아주 미약할 것이다.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 적용을 굳이 도서관에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Fax 송신을 전송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아, 동법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동법 동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만이 가능하다는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은 도서관인의 합의 및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3) 한얼법률사무소(백윤재, 전석진, 박명기) 해석4)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지만, Fax를 이용한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의 경우 Fax는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정보처리장치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제28조 제3항의 본문에서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호대차서비스에서 자료를 전송받은 최종이용자는 이를 가지고 '관외로 나가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이러한 관외유출을 예상하면서도 동 조항을 근거로 자료를 복사, 전송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Fax 전송을 이용한 상호대차 서비스에서 Fax로 전송된 자료를 최종이용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동법 제1항 제1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그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타관 이용자의 관내 열람 목적으로 자료의 복제와 팩스 전송을 한 다음(제3항), 전송된 관외 이용을 위해서 전송된 자료를 다시 한번 복제하여 이용자에게 교부(제1항 제1호)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해석으로서 부당하고, 제28조 각 조항

을 조화롭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Fax로 전송된 자료를 불필요하게 한번 복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Fax를 통한 자료의 관간 전송은 현 저작권법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적법하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판매용 도서는 복제·전송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송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는 보상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겠다.

4) 한얼사무소 해석에 대한 견해

Fax 송신이 전송에 해당된다고 볼 때(문화관광부와 달리 한얼사무소는 Fax 송신을 전송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Fax 송신이 전송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시시비비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Fax를 통한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의 면책 적용 조항은 먼저 동조 제3항과 이어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Fax를 통한 도서관 상호대차가 제3항의 면책의 전제조건인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열람'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3.3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여부

1) 문화관광부 해석

Ariel를 통한 서비스는 전송의 개념에 해당

4) 한얼법률사무소(백윤재·전석진·박명기), KERIS가 한얼법률사무소에 학술정보서비스의 개정 저작권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한 것에 대한 자문번호사들의 해석입(c00277.1.036). 2004. 7. 26.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면책은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도서관간 복제물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의 단서는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된 이상, 동조항의 적용도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 2) 문화관광부 해석에 대한 견해

Ariel 송신을 Fax 송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송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아, 동법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만으로 이의 면책 여부를 가늠하는 적법한 적용 조항이라고 결정지을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또한 동법 제28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르면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된 이상, 동조 제1항의 적용도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도 너무 제한적이라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Ariel을 이용해 전송받는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의 원문을 아날로그 형태로만 출력 제공하고 그 즉시 해당파일을 자동 삭제하는 경우(현재 Ariel 2.0이상은 디지털 파일의 원문을 보내거나 출력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그 파일을 영구 삭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전혀 면책 대상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법 해석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의 취지 및 목적, 현재의 기술 상황을 제

대로 숙지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 3) 한얼법률사무소의 해석

Ariel 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전송(이하 Ariel 전송이라 한다) 서비스도 도서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근거 규정은 동법 제28조 제3항이 되어야 한다. 본 Ariel 전송에서 자료가 스캔 과정을 거쳐 이미지 파일로 복제되어 전송되므로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컴퓨터 등을 이용한 도서 등의 복제·전송’에 해당하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Ariel 시스템에서 자료의 관간 전송이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지는 바, 이를 디지털 형태 그대로 최종 이용자에게(복제하여) 교부해서는 안된다(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1항 제1호와 제3항이 모두 적용되는 이상 Ariel 전송을 행하는 자료소장도서관은 ‘전송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전송받은 자료를 최종이용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자료신청도서관은 ‘복제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각각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이 경우 이중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최초 자료를 신청한 도서관 이용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서 문제가 될 수 있다.

Ariel 전송을 이용한 자료의 관간 전송은 현 저작권법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판매용 도서는 복제·전송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송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이중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한얼사무소의 해석에 대한 견해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의 면책 적용 조항으로 먼저 동조 제3항과 이어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시, Ariel 시스템을 통한 도서관 상호대차는 제3항의 면책의 전제 조건인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한편 Ariel 시스템에서 이를 디지털 형태 그대로 최종 이용자에게 (복제하여)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바이다.

이견이 분분하다.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상 자유 이용이 가능한 면책 사항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행위가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대차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도서관 면책 여부와 그 면책 조건을 현행 저작권법 제28조 조문에 명확화 함으로써, 도서관과 저작권자(출판권자 포함) 등이 보다 폭넓고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정보이용자의 ‘조사·연구’ 활동의 진작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제28조 전체의 취지도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 4.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 개정 방안

#### 4.1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 및 저작권법시행령 개정 방안

##### 4.1.1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 제28조에 관한 법적 개정 방안 취지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도서관 등의 복제 등)는 도서관 등이 도서관 상호협정에 따른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을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여부의 기준이 되는 법 조항의 적용에 대해 유관 기관이나 학자들에 따라 해석상의

##### 4.1.2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제28조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

1) 도서관 등이 도서관 상호협정에 의해 원문복사서비스를 하는 경우, 앞으로는 Fax 또는 Ariel System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를 면책 대상에 포함시켜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 이용’이 허용됨을 명문화 하는 규정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다른 도서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안, 제1항 제4호 신설)

동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한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형태의 복제 전송을 일정한 조

건하에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아날로그 형태의 복제물 제공)를 면책 사유의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법이 충실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방안은 제28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2)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디지털 형태의 일시적 복제는 원문 DB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것이 특징인 원문 DB와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동조 제3항인 도서관간 복제·전송 규정과 이를 구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3) 국제적인 저작권 제한 및 도서관 면책 규정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한 수준에서 그 제한 부분을 명확화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개정방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목적적 요건을 명확화 하였고,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그 제한을 두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국제 규범의 기준의 되는 3단계 테스트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고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영미법계에 속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서관 면책 규정도 참조하였다.

다만, 개정방안에서 제시한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도서관 상호협정 내지 상호대차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미국 저작권법 제108조 (g)(2)에서는 도서관 상호 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도서관 상호협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풀어서 원문복사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법의 안정성 및 기존법 규정에서 등장하는 용어의 사용, 간결성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상호협정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포함시키는 대신 용어를 풀어쓰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힌다.

(4) 도서관 상호대차를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에서 활발한 것이 아니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기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의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 제공은 대학도서관에 비해 매우 낮다. 이와 관련하여 KERIS 상호대차 회원 기관 및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 1999년 10개의 시범서비스로부터 시작하여 전국대학도서관 및 학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되고 있다.
- 2003년 12월 현재 359개 학술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2004년 11월 370여개 대

<표 3> KERIS 회원기관 소속기관 구분 현황 (2003.12 기준)

| 연도      | 4년제 대학도서관 | 2-3년제 대학도서관 | 일반기관 | 공공도서관 |
|---------|-----------|-------------|------|-------|
| 회원기관 구분 | 213       | 99          | 38   | 7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3)



학 도서관으로 증가).

- 전국 대학도서관의 80%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기관 및 공공도서관은 전체 회원 기관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5) 국내의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극히 소액이다.

- ① 상호대차 신청의 대부분은 해외 학술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KERIS 상호대차 시스템을 통한 상호대차 신청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 KERIS 상호대차 시스템을 통해 2002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8만 여건의 트랜잭션 중 자료 유형의 구분이 가능한 트랜잭션 55,292건을 대상으로 한, 자료 유형별 이용 현황의 분석 결과, 해외 학술지가 48%, 국내 학위논문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BLDSC(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er)를 통해 신청한 자료 유형별 상호대차 신청 비율에서도 학술지 75%, 단행본 15%, 컨퍼런스 7%, 기타

3%인 것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학술지의 신청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앞 보고서 2003, 12).

- ② 국내 학술지의 신청율이 낮다.

KERIS 보고서의 사서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하여 해외 학술지에 국내 학술지의 신청 비율이 낮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앞 보고서 2003, 12).

- 국내 학술지의 검색 및 소장처를 파악할 수 있는 권 호 정보 및 기사 색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미비하고,
  - 원문 DB 구축 및 연계 확대에 의한 원문 DB의 직접 입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③ 국내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를 받지 않은 이전 학위논문에 대한 신청이 주를 이루어 신청 비율이 낮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학위논문 이용허락서를 받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학위논문에 대한 원문복사 신청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 ④ 단행본의 경우 국내의 신청 비율이 모두 낮다.

<표 4> KERIS 자료유형별 상호대차 신청 비율

| 자료 유형    | 국내외 | 신청 건수  | 비율    |
|----------|-----|--------|-------|
| 단행본      | 국 내 | 2,464  | 4.5%  |
|          | 해 외 | 3,888  | 7.0%  |
| 학술지      | 국 내 | 4,819  | 8.7%  |
|          | 해 외 | 27,045 | 48.9% |
| 학위논문     | 국 내 | 16,789 | 30.4% |
|          | 해 외 | 133    | 0.2%  |
| 비도서 및 기타 |     | 159    | 0.3%  |
| 총 계      |     | 55,292 | 100%  |

(앞 보고서 2003, 11.)

(6) 상호대차 이용이 활발한 자연과학분야의 경우 최근 학술지는 인쇄물과 동시에 웹 DB로 함께 출판되고 있다. 대부분이 최신 정보를 얻는데 웹 DB의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앞 보고서 2003, 22).

또한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내부용 자료로 작성한 「원문복사서비스 업무 분석(초안)」에 의하면 “신청 및 제공 추이를 보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신청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원문이 제공되는 학술 DB 및 전자저널이 도입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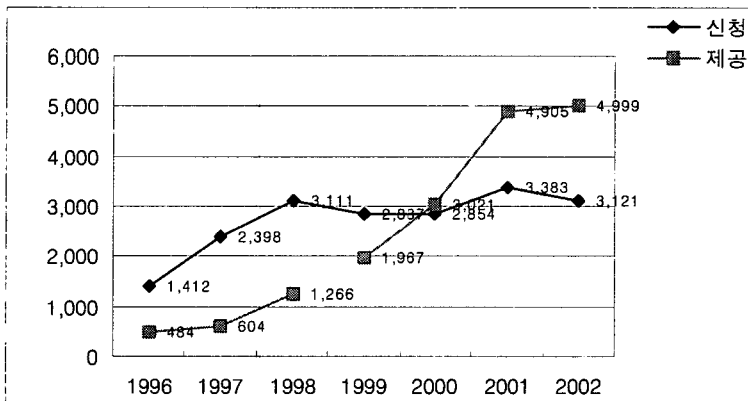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 결과들로부터 유추해 볼 때, 인쇄 형태의 학술지는 동시에 웹 DB 형태로 더욱 출판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최신 정보에 대한 원문복사는 그 신청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다.

(7) 학술지 구독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조건과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도서관 내에서와 외부에서의 접근 및 하드카피 형태의 복제가 허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직접 컴퓨터로 검색 및 열람한 디지털 파일의 원문을 프린트 아웃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받게 된다. 특히 웹 DB를 이용한 출력의 경우, 그 인쇄물의 해상도가 Fax를 이용한 경우보다 훨씬 좋다. 따라서 웹 DB를 구독하고 있는 경우 Fax 및 Ariel을 이용한 최신 정보에 대한 원문복사의 신청율은 향후 더 낮아질 것이다.

(8) 인쇄형태로만 나오는 해외 학술지에 대한 상호대차는 소수에 불과하다.

(9) 제1항 내의 제4호로 규율할 경우 제1항의 본문에 의해 자연스럽게 상호대차에 이용된 도서는 요청받는 도서관의 보관된 도서로 한정시킬 수 있다.

2) 동조 ‘제1항’의 본문에 동조 동항 ‘제4호의 면책 조건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림 1> 연세대학교의 상호대차 원문복사 신청 비율

제4호의 경우 다른 도서관 등은 그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안, 제1항 본문에 단서 신설)

동조 제1항 본문 내에 동조 동항 제4호의 단서를 신설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1) 제1항 본문 내에 동항 제4호에 대한 단서를 신설한 목적은 원문 복제를 요청한 다른 도서관 등이 이용자에게 프린트 아웃 형태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을 뿐,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기 위함이다.
- (2) 동시에 제1항 전체의 법 취지와의 조화도 도모하기 위함이다.

본 단서에 따르면, 앞으로 복제를 요구받는 도서관 등과 복제를 요구한 다른 도서관 등이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용 허락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안한 제1항 제4호와 제1항 본문 단서에 의한 면책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목적: 조사·연구
- 복제물의 대상: 당해도서관의 보관된 도서 등
- 복제 제한 범위와 양: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 1인 1부
- 이용자에게 대한 복제물 제공 주체: 복제를 요구한 다른 도서관 등
-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복제물 형태: 아날로그 형태

- 3) 도서관 등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4항'에 '제1항 제4호'를 추가하도록 개정한다. 이는 전자출판 시장의 형성을 저해하지 않음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의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대로 개정된다면, Ariel을 이용하는 경우 보관된 아날로그 형태의 도서가 시중에서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그 아날로그 형태의 도서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이용허락의 대상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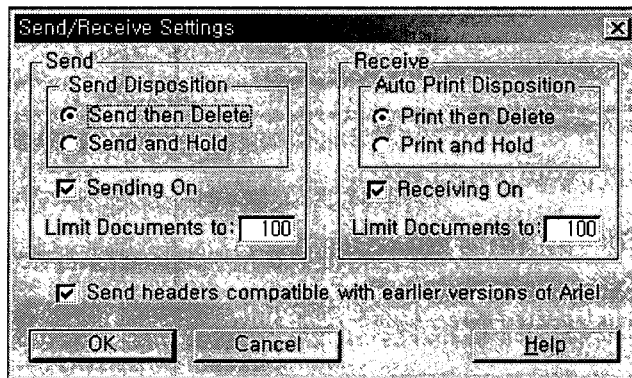
- 4) 동법 동조 제6항에 의거하여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2(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 1호 내에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등과 다른 도서관 등이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이용한 즉시 자동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마'를 신설한다. 그 신설 배경은 다음과 같다.

- ① Ariel을 이용하는 경우 holding 기능도 있지만 Ariel 자체 상 자동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지원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능 중의 하나인 Ariel의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 이다. Ariel, User's Guide Version 3.4와 Ariel 국내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Ariel 2.0 이상부터는 복제를 요구받는 도서관의 경우 <send then delete>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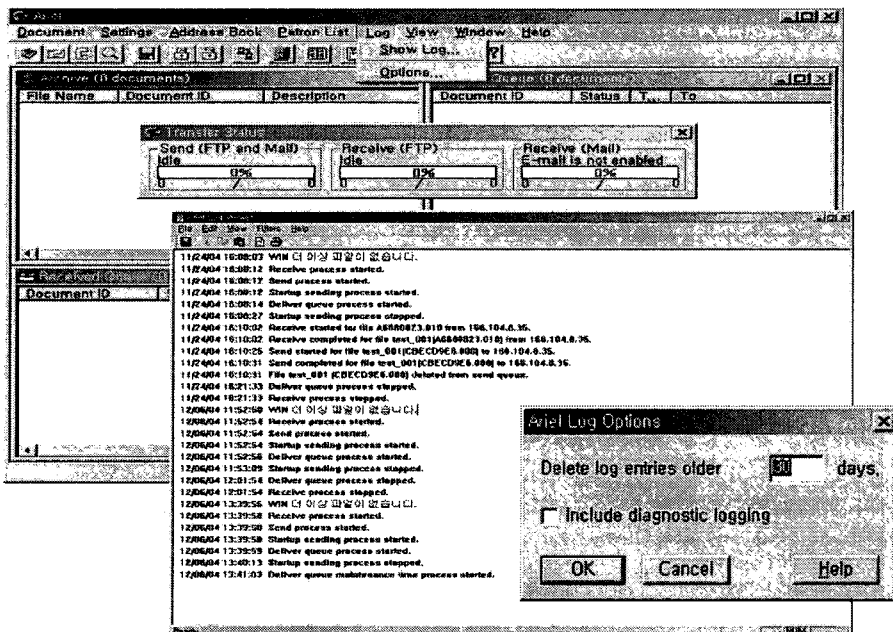
션을, 복제를 요구하는 도서관의 경우 <print then delete> 옵션을 선택하면, 별도의 장치 없이도 해당 디지털 파일이 이용된 즉시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아래의 <그림 2>는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환경 설정을 나타낸 것이다.

② 또한 Ariel은 전송된 기록, 삭제된 기록, 받은 기록 등 그 내역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은 그 관계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보호조치



<그림 2> Ariel의 Send/Receive 시 자동 삭제 환경 설정



<그림 3> Ariel의 전송/삭제 내역의 관리 기능

의 신설 내용은 실제 운용 면을 가정해 볼 때도서관측에 별도의 추가적인 기술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거의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2 ‘마’ 신설은 상호대차에 의해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도서관측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조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 4. 2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 및 저작권법시행령 개정(안) 조문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및 관련 저작권법시행령의 규정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제시한 각 개정(안)의 조문 내용은 다음의 <표 5>, <표 6>과 같다.

### 5. 결론 및 제언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을 준수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 5>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조문

|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저작권법 개정(안)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
| <p>①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lt;개정 1991.3.8, 1994.3.24, 2000.1.12, 2003.5.27&gt;</p> <p>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p> <p>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p> <p>&lt;중략&gt;</p> <p>④ 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를 합에 있어서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 <p>&lt;중략&gt;</p> | <p>①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으며, 4호의 경우 다른 도서관 등은 그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lt;개정 1991.3.8, 1994. 3.24, 2000.1.12, 2003.5.27&gt;</p> <p>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p> <p>&lt;중략&gt;</p> <p>4.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다른 도서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p> <p>&lt;중략&gt;</p> <p>④ 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를 합에 있어서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 <p>&lt;중략&gt;</p> |

〈표 6〉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시행령 개정(안) 조문

| 현행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2(관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 저작권법시행령 개정(안) 제3조의 2(관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
|---|---|
| <p>제28조제6항(법 제60조제2항·법 제71조 및 법 제7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lt;개정 2003.7.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적 조치<br/>가. 그 도서관등과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이하 “도서관등의 이용자”라 한다)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이하 “도서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li> <li>나. 도서관등의 이용자외의 자가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li> <li>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li> <li>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li> <li>3. 컴퓨터등에 경고표지의 부착</li> <li>4.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본조신설 2000.7.27]</li> </ol> | <p>제28조제6항(법 제60조제2항·법 제71조 및 법 제7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lt;개정 2003.7.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적 조치<br/>가. 그 도서관등과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이하 “도서관등의 이용자”라 한다)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이하 “도서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li> <li>나. 도서관등의 이용자외의 자가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li> <li>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li> <li>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도서관과 다른 도서관 등이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이용한 즉시 자동 삭제할 수 있는 조치</li> <li>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li> <li>3. 컴퓨터등에 경고표지의 부착</li> <li>4.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li> </ol>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Fax 및 Ariel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여부를 규율하는 조항은 현행 저작권법의 제28조 내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하여 도서관 면책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해석들이 분분하다. 도서관들은 안전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일단 중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규범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상호대처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면책 적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우리 현행 저작권법에 입각한 문화관광부와 한얼법률사무소가 내린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하였다. 각 해석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와 저작권법시행령에 관한 개정방안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각 개정(안)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법적 개정 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Fax 또는 Ariel System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의 경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다른 도서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원문복사를 요청한 다른 도서관 등이 이

용자에게 프린트 아웃 형태의 복제물만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동법 제1항 제4호의 경우 “다른 도서관 등은 그 이용자에게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동조 ‘제1항 본문’에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전자출판 시장의 형성을 저해하지 않음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의 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문복사를 요구한 해당 자료가 시중에서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동법 동조 ‘제4항’에 ‘제1항 제4호’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4) 동법 동조 제6항에 의거하여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2(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 1호 내에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등과 다른 도서관 등이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이용한 즉시 자동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마’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취해야 할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현실적인 저작권 대응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서관들은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 복사 제공과 관련하여 다품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단 중지하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이것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저작권이 있는 학술 저작물의 이용계약 및 이용허락서 체결 시 도서관의 적법하고 안전한 상호대차를 위해 저작물의 이용방법과 조건을 ‘서면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실제로 도서관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의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홍보·교육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도서관의 ‘안전한’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출판권자 포함), 법학자(교육자 포함), 문헌정보학 교수, 도서관 사서, 이용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문제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발전된 기술에 따른 요구사항을 법에 수용하고 현행법의 미흡한 점들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작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들은 인터넷 시대의 진정한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향후 저작권법 개정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전략 및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국내외의 저작권법에 관한 보다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여 전체적으로 뜻을 모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작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이고도 적극적인이며 꾸준한 노력이 도서관인들 전체로 확산될 때, 우리의 요구사항이 법 개정예 반영될 가능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문화관광부. 『상호대차서비스의 도서관 보상금 제도 포함 여부』. 2004. (KERIS 학술 041C212-000 66).
-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 「審議經過の概要」. [cited 2005.2.1].  
<[http://www.cric.or.jp/houkoku/h13\\_12b/h13\\_12b.html](http://www.cric.or.jp/houkoku/h13_12b/h13_12b.html)>.
-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 「審議經過報告」. [cited 2005.2].  
<[http://www.cric.or.jp/houkoku/h15\\_1b/h15\\_1b.html](http://www.cric.or.jp/houkoku/h15_1b/h15_1b.html)>.
- 백윤제, 진석진, 박명기. 2004. 『학술정보서비스의 개정 저작권법 위반 여부』.(c00277.1.036). 한얼법률사무소.
- 吳承鍾, 李海完. 2004. 『著作權法』. 제3판. 서울: 박영사.
- 안효질. 2004. 『국내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새로운 과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저작권법 세미나 자료집, pp.9-21.
- 장인숙. 1996. 『저작권법원론』. 서울: 보진재.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2.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1)/(2)』.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7.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집』. 개정판.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cited 2004.9.15]  
<<http://www.copyright.or.kr>>.
- 최경수a. 2003. 2003 개정 저작권법 개요 『국회도서관보』, 40(5): 2-9.
- 최경수b. 2003.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2003년 개정 저작권법(상). 『계간 저작권』, 가을호, 63: 43-59.
- 최경수 역. 1994.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국립위원회의 최종보고서 (CONTU)』.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03. 『상호대차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이용데이터 분석 및 활용』.
- 홍재현, 이호홍, 정경희, 이호신. 2004. 『학술정보자원의 개발·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 및 저작권 보상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KR 2004-14).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홍재현a. 2004.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 복사 서비스와 저작권 관계. 『저작권문화』, 122: 9-11.
- 홍재현b. 2004.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과 저작권 보상 대응 전략』.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0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자료집.
- 홍재현c. 2004.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93-119.
- 홍재현. 1998. 미국 학교 및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추진 현황.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문집』, 2: 261-275.
- CONFU: The Conference on Fair Use. [cited 2004.10.1].



- <<http://www.utsystem.edu/OGC/IntellectualProperty/confu.htm>>.  
CONFU Interlibrary Loan Working Summary. March 27, 1996. [cited 2004. 10.1].  
<<http://www.utsystem.edu/ogc/intellectualproperty/illconfu.htm>>.
- CONTU Guidelines on Photocopying under Interlibrary Loan Arrangements, [cited 2004. 10.1].  
<<http://www.cni.org/docs/infopols/CONTU.html>>.
-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cited 2004.9.30].  
<<http://www.copyright.gov/title17>>.
- Curley, Duncan. 2004. 『Intellectual Property Licences and Technology Transfer』. Oxford: Candos Publishing.
- Document Supply Service Copyright Requirements. [cited 2004.10.].  
<[http://www.nla.gov.au/dss/dss\\_copyright.html](http://www.nla.gov.au/dss/dss_copyright.html)>.
- Office of Legislative Drafting. Attorney-General's Department, Copyright Amendment (Digital Agenda) Act 2000. [cited 2004.10.2].  
<<http://www.gurdjieftebooks.com/CopyrightAmendDigitalAgenda2000.pdf>>.